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. 7. 16 선고 2015가단287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6. 25.

판결 선고 2015. 7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기재 부동산 중,

(1)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1) 부분 지상 목조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34㎡,

(2) 별지 도면 표시 7, 8, 9, 10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지상 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창고 7.2㎡,

(3) 별지 도면 표시 11, 12, 13, 14,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ㄷ) 부분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24㎡를

각 철거하고,

나.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진화원

별지